

충남 RISE공유대학 운영 규정

제정 2026.03.0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호서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38조의2에 따라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위 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충남RISE공유대학”이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(이하 RISE사업)에 참여하는 대학간 학문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·연구기관·학회·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대학 컨소시엄을 말한다.
2. “공동학위”란 협약대학 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협약대학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3. “마이크로디그리”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말한다.
4. “공유대학 총괄대학(이하 “총괄대학”이라 한다)”이란 미래형 인재양성 등 고등교육혁신을 총괄하며, 협약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관·지원한다.
5. “주관대학”이란 충남RISE공유대학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을 설치한 대학 중 공동 교육과정의 제반 업무를 운영하는 대학을 말하며, 각 융합전공의 주관대학은 [별표2]와 같다.
6. “협약대학”이란 RISE공유대학내의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대학을 말한다.
7. “참여대학”이란 충남RISE공유대학 내의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대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용한다.

제4조(수업형태) 수업은 정규학기 및 하계·동계방학 중에 실시한다.

제 2 장 조직

제5조(직제) ① 학칙 38조의 2에 근거하여 충남RISE공유대학을 설치하고, 별표 1과 같이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을 둔다

② 참여대학 간 융합전공의 교무를 통괄하여 운영하는 주관대학 [별표2]에서 전공주임교수를 정할 수 있다.

③ 주관대학의 전공주임교수는 참여대학의 융합전공 참여교수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공동학위 전공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제 3 장 융합학부(전공) 및 학생정원

제6조(융합학부 및 융합전공) 충남RISE공유대학에 [별표1]의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을 둔다.

제7조(학생정원) 충남RISE공유대학의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별도 정한다.

제 4 장 학생선발

제8조(선발방법) ① 학생선발 및 모집에 관한 사항은 충남RISE공유대학 주관대학에서 별도 정한다.

제9조(지원절차)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
2. 소속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
3. 기타 충남RISE공유대학 주관대학이 정한 서류

제10조(장학금 지급) 충남RISE공유대학에 참여 및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전공의 변경) ① 충남RISE공유대학 내 전공은 변경할 수 없다.

② 충남RISE공유대학 내 융합전공을 취소한 경우, 해당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참여대학의 자유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 5 장 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

제12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충남RISE공유대학의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은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협력하여 정한다.

- ② 융합전공 교과목은 각 대학의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편성한다.
- ③ 충남RISE공유대학 내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마이크로디그리과정 과정은 최소 9학점 이상, 최대 15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다.

제13조(교과목 설강) ① 교과목은 각 대학에서 설강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의 사정으로 교과목 설강이 어려울 경우 주관대학의 교과목을 학점교류로 이수할 수 있다.

②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교과목 주관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주관대학에 제출하여야 하고, 수강신청 전에 참여대학에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강신청) ① 참여학생 및 일반학생은 충남RISE공유대학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수강 변경은 각 참여대학에서 정한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하며, 변경 결과를 주관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수강 철회는 각 참여대학에서 정한 수업일수 1/4선 내에 신청하며, 철회 결과를 주관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충남RISE공유대학 부·복수전공 지원자는 충남RISE공유대학 교과목을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.

제15조(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) ① 융합전공(복수전공) 이수학점은 각 전공에서 정한 학점 이상으로 한다.
②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 재이수 신청을 하며,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 평균을 다시 산출한다.

제16조(성적평가 및 제출) ① 융합전공의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,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관대학이 정한 기일 내에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각 대학별 성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[별표3]과 같다.

제17조(강의평가) 강의평가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.

제 6 장 학위수여

제18조(학위수여) ① 공동학위수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과 참여대학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, [별표4]의 학위종별에 따라 학위증을 수여한다.
②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별 지정된 최소학점 이수 시, 공동학위증에 해당 과정을 표기한다.

제 7 장 상벌

제19조(상벌)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 8 장 보칙

제20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남RISE공유대학 주관대학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〈별표 1〉

충남RISE공유대학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현황

대학명	융합학부	융합전공	비고
충남 RISE 공유대학	그린바이오	디지털육종전공 생물소재전공 스마트팜운영전공 원료생산표준화전공 천연물프로파일링전공 바이오데이터전공 바이오마커활용전공 전임상지원전공 그린바이오마케팅전공	공동학위
	-	스마트모빌리티융합전공	공동학위

〈별표 2〉

충남RISE공유대학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

대학명	융합전공명	주관대학
충남 RISE 공유대학	디지털육종전공 생물소재전공 스마트팜운영전공 원료생산표준화전공 천연물프로파일링전공 바이오데이터전공 바이오마커활용전공 전임상지원전공 그린바이오마케팅전공	순천향대학교
	스마트모빌리티융합전공	국립공주대학교

〈별표 3〉

충남RISE공유대학 성적기준

등급	만점(실점)	평점(4.5)
A+	95~100	4.5
A, A°	90~94	4
B+	85~89	3.5
B, B°	80~84	3
C+	75~79	2.5
C, C°	70~74	2
D+	65~69	1.5
D, D°	60~64	1
F	60미만	0

〈별표 4〉

충남RISE공유대학 융합전공 학사 학위

대학명	융합전공명	학위명
충남 RISE 공유대학	그린바이오	이학사
	스마트모빌리티	공학사